

2000/11/16

2000 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법정 남북 공동 검사단

기소장과

일본정부의 국가 책임에 대한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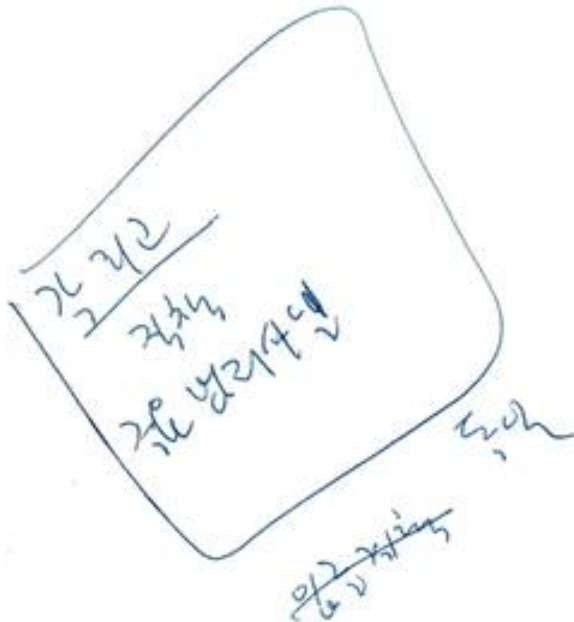
[2000 년 11 월 16 일]

* 남북 공동 검사단은 본 기소장과 심리에 대한 수정의 권리를 갖고 있다.

(1 부: 개인의 형사 책임)

2000 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2000년

✓ 법정 남북 공동 검사단피고인히로히토(裕仁) 외 11 명기 소 장

2000 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법정') 남북공동 검사단은 법정의 현장 제 11 조에
 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아래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이,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로 아래
 의 피고인을 고발한다.

히로히토(裕仁),

도조 히데키(東條英樹), 미나미 지로(南次郎),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오키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유조(),

기타무라 에이번(), 기타무라 도모코()

이중

배경

1.1 구 일본과 일본군이 한국 점령기간 중에 조선인 '위안부'에게 저지른 일은 특수한

'용어문제로 널리 사용되는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는 일본의 '이안후 Ianhu', 한국의 '위안부'란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에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 '위안부'란 용어는, 이 여성들이 아래에서 논증하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하에 자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제였다.

일본의 강제 한국 점령

1.2 19세기 후반 조선왕조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동안, 일본 제국은 한국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급처란 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였다.

1.3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소위 정한론(征韓論)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공격과 확장 정책을 추구해 왔다. 즉, 일본은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1.4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일본에 유리하도록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잇따라 한국은 서구 열강들과도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다. 서구 열강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다른 불평등 조약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1.5 청일전쟁(1894 - 1895)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는 시모노세키 조약(1895)에 의해 공인되었다. 1902년 1월 30일 영일동맹과² 1905년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1.6 1904년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은 십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한국을 강제 무력으로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³ 일본은 한국에 독점적인 위치를 보장 받았다.

1.7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은 한국 제국 정부의 대표자를 강압함으로써 1905년 일본과의 조약을 비준하도록 만들었다. 이 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보호하에 종속시켰다.⁴ 1907년 조약을 통해 일본은 한국이 국내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1907년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1.8 1910년 일본 제국은 한국을 합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⁵

1.9 한국을 점령한 이후, 한국에 대한 주요 지배 수단으로서 독점적인 군사력을 배치하였다. 일본군은 천황의 명령에 따라 총독에 육군과 해군 장군을 임명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인들에 대하여 군사적인 지배를 수행하는 전제군주인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지배체제를 수립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수십만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거대한 군사경찰

것과 같은 '성노예'로서의 현실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는 모욕적이고 왜곡된 표현이다. 여성들이 사기, 납치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체계적으로 동원된 후 일본군에 의해 계속적인 강간과 노예의 상태에 처하였던 장소를 '위안소(慰安所, comfort station)'라고 부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 맥두갈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지적하다시피 실상은 '강간수용소'였다. UN Doc. E/CN.4/Sub.2/1998/13, 22 June 1998, para. 1.

² Martens, *Nouveau Recueil Général de Traités*, 2me Série, vol. 30, p. 650.

³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⁴ Treaty of November 17, 1905; Martens, *Nouveau Recueil Général de Traités*, 2me Série, vol. 34, p. 727.

⁵ 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 29 August 1910. 이 조약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한일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

력으로써 한국 민중을 압박하였다.

1.10 일본이 한국을 임의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독립을 향한 한국인의 투쟁은 국내외에서 계속되었다.

일본의 조선 민족 정체성 말살정책

1.11 일본 강제 점령 후반부에 일본 제국주의는 특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동화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내선 일체화(內鮮一體化)”라는 미명 아래 “하나의 같은 조상과 뿌리”,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궁숭배”와 같은 것을 강요하였다. 그들은 또한 일본어를 강제적으로 ‘모국어’처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들은 한국의 오천년의 역사를 왜곡하였다. 가치있는 문화재, 유물, 유적들은 무차별적으로 약탈하였고 파괴하였다.

1.12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령에 의거하여 자국의 이익, 특히 전시체제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징발하는 수단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6백만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성인들을 노무자, 군인, 군속으로 징집하였다. 그들 중의 상당수는 강제노동에 복무하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고, 심지어는 죽어서 일본 군대의 canon fodder가 되기도 하였다. 셀수 없는 한국인 혁명가들, 애국자들, 순진한 민중들은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 무차별 학살, 즉결 처벌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강제 징발은 한국인 여성을 ‘위안부’로서 징집해 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

일본의 조선민중의 약탈과 착취

1.13 농촌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경제적 착취는 한국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봉건국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14 일본은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미곡 공출령” 등의 정책을 통해 조선인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일본이 한국의 쌀 생산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한국을 일본의 식량 공급처로 삼음으로써 한국의 식량 상황은 심각하게 황폐화되었다. 경제적 수단에 대한 심각한 강제로 인해 상당수의 농민은 그들의 토지와 식량을 압수당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유랑민이 되거나 일본인 혹은 한국인 지주의 소작농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15 일본과 싱가포르와의 전쟁이 연장되고, 태평양 전쟁이 임박해 짐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는 농민 뿐만 아니라 또한 전국민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일본 노무자들의 임금의 1/3 혹은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였고, 거기에 또 모든 종류의 세금 명목으로 그 임금의 절반 이상을 청구 하였다.

1.16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수송 체제’를 강화하였고, 쌀과 다른 농산물, 철, 코발트, 채목, 해산물 등을 약탈해 갔다. 그들은 심지어 장신구, 가정용품 등 전

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약탈해 갔다. 태평양 전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1942년부터는 해마다 3 백만 톤의 송진을 생산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산과 들을 채벌했다.

일본 지배의 후반기에서 조선 여성의 상황

1.17일본 지배하에서 한국인 여성들의 상황은 그 당시 한국 상황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족, 교육, 노동이란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지배 하에서 한국인들은 정치적 선거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한국의 여성들은 일본에서처럼 여성들이 그들의 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한 운동의 역사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주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주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3.1 운동과 근우회와 같은 여성운동 조직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1930 년대와 1940 년대에 이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모든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한국인의 '목소리'를 질식 시켜버렸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이 한국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의 공간은 짓눌려 버리고 말았다.

1.181929 년 이후의 대공황은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중국 침략과 태평양 전쟁과 같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은 한국을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공급기지'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한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 특히 단일 작물로서 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농업에서 미곡가격의 급락은 농촌경제를 더 비참한 곤궁의 상태로 몰고 갔다. 전쟁수행을 위한 곡물의 착취는 전체적으로 한국인을 빈곤의 상태로 만들었다.

1.19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농촌 여성의 경우에는 집안의 생계를 도울 목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더 커졌다. "농촌여성은 소 한 마리 보다 더 낮고 힘도 세다"라는 그 당시의 속담이 바로 그 자체로 이러한 현실을 말한다. 여성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돌봐야 했고, 항상 가족의 매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다. 여성은 쑥이나 감자, 조, 비지 등을 먹어야만 했다. 심지어 이것들조차 충분하지 않을 때는 풀이나 나뭇잎 나무껍질 등을 채취하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돕고, 먹고 살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돈을 벌러 떠나야만 했다. 게다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덜 중요하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20일제하 일본은 일본에서 들여온 호적제도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 체제를 결합시켜 국가의 가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 시켜 나갔다. 가족의 '부속'으로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가 견고하게 수립되어 갔다. 게다가 여성은 법적으로 무능력하고 모든 법적인 행위에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정치적 참여를 위한 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 여성과 달리 이 가족제도의 상황은 한국 여성을 가족에 묶어놓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무르게 하였다.

1.21이 시기 한국의 여성 교육은 침체되어 있었다. 1919 년에 한국여성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0.7%에 지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5.3%). 1930 년에 여성의 입학률은 5.7%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1931 년까지만 해도 여자중학교에 등록된 여학생의 수가 5,000 을 넘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라 할지라도,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식민지와 군국주의하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의 길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 여성들 역시 가족과 결혼에 모든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1.22 여성들의 고용 기회는 강제점령과 불황 하에서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에, 여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산업을 이식하였다. 예를 들면 1934 년 방직공장의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력의 80-90%에 달하였다. 그들 중의 대부분은 12-15 세의 어린 여성들이었다. 한국인 여성 노동자가 하루에 14-15 시간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일본 남성 노동자의 1/4 이고, 일본 여성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불황과 전시상태로 인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도덕적 몰락으로 인해 한국인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또한 일제가 여성을 매매하는 것을 묵과함으로써 '공창' 체제를 제도화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1.23 한국 여성 앞에 닥친 극도의 가난과 그 당시 여성의 낮은 지위라는 상황이, 사기와 폭력을 통한 '위안부'로의 연행을 가능하게 했다. '위안부'의 체계적인 연행은 오직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통제와 정치적 군사적 지배의 맥락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침략전쟁과 일본군 위안소: 지리적 위치

1.24 1937 년 중일전쟁이후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시켜 북쪽으로는 알류산 열도까지,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까지 남쪽으로는 뉴기니아를 비롯한 남태평양 제도까지, 서쪽으로는 인도양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비마에까지 이르렀다. 연합군과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 본토와 중일전쟁 이전에 일본의 영토로 합병된 영역, 즉 조선(한국),⁶ 대만, 북중국에도⁷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25 한국 여성은 일본군 위안소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처로 여겨졌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전지역에 위안소가 있었는데, 한국인 '위안부'는 심지어 최전방까지 끌려가야 했다. 이것은 그들이 생존이 위협 받는 장소에서까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2.1 히로히토(1901-1989): 1926 년부터 1989 년까지 일본 천황

⁶ Banjin 의 위안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⁷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곳은 위안소의 본포지역에 관한 지도 참조.

- 2.2 도조 히데키(1884-1948): 1937년 관동군 참모총장, 1938년 육군차관, 1940년 7월부터 육군대신, 1941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수상, 육군대신, 내무대신 겸임.⁸
- 2.3 오카무라 야스지 (1884 - 1996): 1932년 상해 파견군 참모부장, 1938년 6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중지나지역 제 11군 사령관, 1944년 11월부터 종전까지 중국파견군 사령관.
- 2.4 미나미 지로 (1874-1955): 1929년 8월 조선군 사령관, 1931년 4월 육군대신, 1934년 12월 관동군 사령관, 1936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조선 총독.⁹
- 2.5 이타가키 세이시로 (1885-1948): 1936년 3월 관동군 참모총장, 1938년 6월부터 1939년 8월까지 육군대신, 1939년 9월부터 1941년 7월까지 중국파견군 참모총장, 1941년 7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조선군 사령관, 1945년 4월 제 17군 사령관 겸임.¹⁰
- 2.6 우메즈 요시지로 (1882-1949): 1936년 3월부터 1938년 5월까지 육군차관, 1938년 5월부터 제 1군 사령관,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관동군 사령관, 1944년 7월부터 종전까지 군참모부장.¹¹
- 2.7 안도 리키치 (1884- 1946): 1938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 5사단 사령관, 1938년 11월부터 1940년 2월까지 제 21군 사령관, 1940년 2월부터 1940년 10월까지 남지나군 사령관, 1941년 11월부터 1944년 3월까지 대만군 사령관, 1944년 3월부터 제 10군 사령관, 1944년 12월부터 종전까지 대만 총독.
- 2.8 마츠야마 유조 (1894- 1947): 1939년 27사단 보병연대 사령관, 1942년 12월부터 종전까지 버마군 56사단 사령관.
- 2.9 기타무라 에이분, 기타무라 도모코: 민간인, 버마의 '위안소' 경영자

Superior Authority

⁸ 극동국제군사법정에서 전쟁범죄가 아니라, 중국과 서구 열강에 대한 전쟁 책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 463-464 쪽.

⁹ 극동 국제 군사법정에서 만주와 중국 침략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454-6 쪽. 그러나 조선 총독으로서의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¹⁰ 극동국제군사법정에서 말레이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 보르네오와 니코바르제도, 안다만을 점령하였던 제 17 지역군의 사령관으로서 포로와 민간 억류인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정에 따르면, "전쟁법에 따르면, 이타가키의 의무는 포로들과 민간 억류자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만일 그가 포로들과 민간 억류자들을 당분간 건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판단하였다면, 그의 상관에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할 경우 연합군측에 포로와 민간 억류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가 채택한 정책으로 볼 때, 그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수천명의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판결문, 450 쪽. 그는 교수형의 판결을 받았다.

¹¹ 극동국제군사법정에서 전쟁의 위협속에서 포로와 민간 억류자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교수형의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461-463 쪽, 466 쪽.

3.1 1926년 12월부터 1989년 1월까지 히로히토는 일본의 천황이었다.¹² 1926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국가의 대표자였고, 일본 제국내의 사법, 행정, 입법 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유일한 최고의 주권자였다.

3.2 히로히토는 또한 일본 육해군의 총사령관이었다. 그의 명령은 수비와 관련되는 일, 기획의 입안, 전시와 평화시 군대의 작전, 군대와 사병의 내부 조직과 처벌규정,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군대를 파송하는 명령을 내릴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군대 작전 수행에 관한 책임을 맡는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천황의 명령에 따라 각 군대가 배정 지역으로 이동하고, 작전을 수행하였다.

3.3 위안소는 일본군 수립의 일부분이었다. 위안부는 일본군 체계 내에서 군수 물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히로히토는 일본군에 의해 운영된 위안소의 유지와 수립 전반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3.4 도조 히데키는 1941년 10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수상, 육군대신 내무대신을 겸임하였다. 그의 직위로 볼 때, 그는 군대 행정에 관한 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일본군에 의해 운영된 위안소의 수립과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3.5 1936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미나미 지로는 조선의 총독이었다. 조선을 지배하는 데 있어 총독의 권력은 원칙적으로 천황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었다.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총독은 육군과 해군의 통제와 명령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모든 정부 업무에 관해 책임을 갖고 있었다. 총독은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였다. 총독은 예외적으로 척무성의 통제와 감독에서 제외되는 절대적인 권력의 소유자였다.

3.6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1941년 7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조선군 사령관이었다. 조선군은 히로히토의 직속 군대였다. 조선군 사령관은 군대 행정에 관한 육군성의 지시와 군 작전에 관한 군 참모부장의 지시에 근거하여 조선 헌병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3.7 이타가키 세이시로, 오카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유조는 일본군의 사령관으로서, 군대의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그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각 군의 사령관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높은 직위에 걸맞는 의무와 군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의 그들의 명령과 통제하에 놓여있는 지역내의 병영 안에 설립된 위안소의 설립과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General Allegations

이념적, 정치적 목적

4.1 현재 이 기소장에 언급되는 사항은 조선의 전 지역의 일본의 점령하에 들어간 상

¹² 일본 기소장 참조, 전문가 증인의 증언 참조.

황과 관련이 있다. 조선과 일본은 1904 년 이래로 계속 전시 상태였다.

4.2 러일전쟁(1904 - 1905)중에 조선의 영토의 일부가 전장이 되었고, 일본군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 조선 영토의 일부분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즉시 조선에서는 일본군의 침입과 점령에 대한 무력저항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해나갔고, 급기야 1910 년 조약을 체결하여 합병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된 조선군의 병사들, 민중들과 일본 사이에는 끊이지 않는 충돌이 일어났다. 상해 임시정부(이후 Chongqing 으로 옮김)와 다른 독립군은 국내외에서 1945 년 8 월까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갔다.

4.3 조선의 일본 군사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꾀했다.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하여 조선의 일부에 군사법을 적용시켰다. 일제는 조선의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꾸었고, 이 것은 1945 년까지 지속되었다. 총독이 누구냐에 따라 지배의 형식과 내용이 조금씩은 달랐겠지만, 그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군사적 강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4.4 설사 조선이 1910 년부터 1945 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음을 인정한다고 하자.

4.5 아래에서 논증하게 될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해당하는 전쟁범죄인 모든 행위와 목인은 일본인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1910 년에서 1945 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1951 년의 평화조약을 포함하여 일본이 도쿄법정에서 인정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4.6 이 기소장에서 언급하는, 일본군 성노예의 희생자인 모든 조선인 '위안부'는 그 당시 일제 점령기하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4.7 이 기소장의 피고인은 1907 년 헤이그 협정 4 항을 포함하여 전쟁에 관한 법과 규칙을 지켜야 했다.

4.8 이 기소장에 논증하는 모든 행위와 목인은 아래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1937 년과 1945 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¹³

4.9 이 기소장의 피고인은 또한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해당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

4.10 인도에 반한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와 목인은 민간인, 특히 조선의 민중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에 해당한다.

4.11 히로히토는 개인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하여 법정 현장의 2 조 1 항에 해당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 범죄에 관한 책임이 있다. 개인 범죄 책임은 아래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은 행위와 목인의 실행과 기획과정에 참여 하였거나, 기획, 조장, 명령, 수행, 협조, 교사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오카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유조, 기타무라 에이벤, 이카무라 도미코

¹³ 1894 년 청일전쟁시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군위안소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거나 1904 년 러일전쟁시에 이미 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1932 년 만주사변 시기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다.

역시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2 히로히토는 법정 현장 3조 2항에 의거하여 일본군의 최고위 책임자로서의 그 아래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범죄에 대한 명령 책임이란, 고위 장교가 그 아래의 하위 장교가 저지른 범죄를 알고, 범죄를 저지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범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오카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유조 역시 이와 같은 책임을 진다.

Counts

일본군 '위안소'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 (기소 조항 1-2)

5.1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히로히토는 참모총장과 육군대신, 조선군 사령관, 대만군 사령관, 관동군 사령관, 중국수송부대, 남방군 사령관, 버마군 사령관에 의해 수행된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정점에 서 있었다.

5.2 '기타 복지'라는 명목하에 은상과의 권한으로 1942년 3월 30일 칙령 300 번에 육군성이 위안소에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수상이자 육군대신인 도조 히데키가 서명을 하였고, 히로히토가 이를 승인했다.¹⁴

5.3 히로히토는 일본 정부의 조직이 위안소 체제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묵인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5.4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육군대신이자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외무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조직을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소'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¹⁵

5.5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안도 리키치는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남태평양 지역으로 '위안부'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⁶ 도조는 여기에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다.¹⁷

5.6 도조 히데키는 해외 영사관과 일본인들이 위안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데 외무성 산하의 각 영사관과 연결되어 위안소와 관련된 범죄와 이에 대한 묵인을 한 것에 대해 수상으로서

¹⁴ Article 9, item v, [Japanese] Official Gazette No. 4565 (31 March 1942). See also Memoir of Inoue Masanori who served the Division; recited in Hata Ikuhiko, *Ianfu to Senjo no Sei* (Comfort Women and Sex in War Field), 1999, p. 105. For other grounds, see the Chinese and Japanese Indictments.

¹⁵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당시에 이미 '위안소'가 있었다고 할 지라도, 본 기소장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설치된 위안소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문단에서 부과하게 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직도 전시문서자료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범죄의 자세하고 완전한 내용의 발굴과 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논증하듯이 일본정부와 개인들은 종전 직후 이와 관련되는 증거자료를 즉각적으로 파기하였다.

¹⁶ 臺灣軍司令官「南方派遣渡航者ニ關スル件」, 1942.3.12, 자료집성 2.

¹⁷ 陸軍省副官「南方派遣渡航者ニ關スル件」, 1942.3.16, 자료집성 2. 대만 총독으로서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만 기소장 참조.

의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대만의 총독부는 외무성으로부터 1942년 1월 10일에 작성된 '남태평양 점령지역 내의 위안소 설치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서 군대가 요청한 바에 따라 위안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항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외무대신에게 지시를 요청하고 있다. 1월 14일자로 되어 있는 '남태평양 점령지역내의 위안부 이송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 보면, 외무대신인 토고 시게노리는 군대에서 발행한 증명서(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불가능)를 소지한 여행자들에게 도항을 허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¹⁸

5.7 영사관이 외무대신에게 여성의 이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조선이나 대만 등 일본 점령지역내의 영사관이 '위안부'의 상황과 위안소 업자들과 같은 위안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를 올린 사례도 있다.¹⁹ 외무성의 아메리카국의 제3사단의 감독관은 1940년 9월에 대만 총독부의 외무부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²⁰ 그 통지에 따르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항 목적을 명기한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하며, 위안소 일과 관련한 도항은 긴급한 사항이므로 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5.8 도조 히데키는 육군성의 위안소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목인 또는 관련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수상으로서 책임이 있다. 수상은 1942년 4월 위안소 업자들과 '위안부'들의 이송과 관련하여 인사국 은상과에 지시를 내렸다. 1942년 3월 26일자 회람에 보면, 쿠라모토 케이지로 과장은 일본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사병 밑에 군인을 위한 위안 시설을 영구히 설치할 것을 희망한다고 적고 있다. 6개월 후인 9월 3일 회람 문서에 보면, 북중국에 100개, 중지에 140개, 남지에 40개, 남해에 10개, 사할린에 10개, 이렇게 하여 전부 400개의 위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²¹ 육군대신은 정기적으로 고위 관료 회의에 참석하였다.

5.9 군 위안소 체제는 성노예제이다.

5.10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안도 리키치는 위안소에서 조선인 여성에게 자행되는 범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²²

¹⁸ 보루네오와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일본의 기소장 참조. 극동 국제 군사법정에서 도조 히데키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The Tribunal stated: "Upon his resignation in [September] 1942 TOGO appears to have endeavored to see to the observance of the Rules of War. He passed on such protests as came to him for investigation and in several instances remedial measures were taken. At the time of his resignation atrocities committed by the Japanese troops had not become so notorious as to permit knowledge to be imputed to him..." (Judgement, p. 461). 그러나, 그가 전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문서에 나타나는 것은 그가 '위안부'에게 자행된 잔학한 행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위안소와 관련되는 다른 증거가 제기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¹⁹ For example, see Matter regarding Control of travel to China [Taipai Provincial Governor] (13 Jan. 1939); Matter regarding various statistical report on the temporary arrangement for nationals to travel to China (11 June 1941).

²⁰ Governor of Takao Province, Matter regarding Treatment of Travelers to the Chinese Coastal Area Considered as Impossible to Obtain Certificates of Reasons for the Travel to China and other Documents (23 August 1940).

²¹ Kinbara Setsuzo, *Rikugunsho Gyomu Nissi Tekiroku* (Summary of the Work Journal of the Ministry of Army).

²² 히로히토의 동생이며,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다카마쓰미야(高松宮)의 일기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안도 리키치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기소조항 1:

법정 헌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전쟁범죄(성노예)

기소조항 2:

법정 헌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노예화)

한국인 '위안부'의 강제연행(조항 3-4)

5.11 '위안소' 정책이 수립된 이후, 위안소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엄청난 수의 한국이 여성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는 일본당국의 하급관리나 이에 협력하는 민간업자들이 관여하였다.²³

5.12 김군자(1926-): 일본군 성노예의 한국인 피해자중의 한 명. 1942년 3월 16살이 되던 해에,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입고 있는 한국인 남자를 따라갔다가, 북중국의 후이춘에 있는 '킨가쿠'라는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 당시 그녀는 강원도 철원의 경찰이었던 양아버지였던 최철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생각하였다.²⁴

5.13 박용심(1921-)의 경우는 지방 경찰의 협력하에 강제 연행이 이루어진 또 다른 예이다. 1938년 3월 당시 16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일본 경찰이 공장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이후 그는 그녀를 평양에서 난징의 위안소로 보냈다.²⁵

5.14 일본 경찰은 때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연행하였다. 조순덕(1921-1999)은 서울에서 함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경찰은 원산의 경찰서에서 그녀를 심문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세이다이' 혹은 '혜세이다이')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으나, 경찰은 그녀를 다른 세 명의 어린 여자들과 함께 끌고갔다.²⁶ 윤두리(1928-)는 1943년 16살 되던 해에 한국의 부산진의 역사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한 남부경찰서에 속해있는 경찰이 강제로, 그녀를 일본으로

에 '위안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본 기소장 참조.

²³ '강제연행'의 개념이 단지 연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한 것에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행되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까지 포함한다.

²⁴ 부록의 증언 참조.

²⁵ 위의책. 아래 5.51 절 참조. See also an article by Walter Rundle, United Press war correspondent, in China Burma India Roundup, 30 November 1944, filed before the Tribunal.

²⁶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ces below.

보내는 군인이 감시하고 있는 장소로 보냈다.²⁷

5.15 군부와 경찰의 협조아래 지방 행정 관리가 연행과정에 관여한 사례도 있다. 김복동(1926-)은 그녀가 15살 되던 해인, 1941년, 계급장을 단 군인과 이장이 강제로, '데신타이'로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3년간 일을 하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는 중국의 관동에 보내졌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아시아 주변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²⁸ 심지어는 11살 먹은 여자아이도 이와 비슷하게 끌려간 사례가 있다.²⁹

5.16 연행자들은 한국 여성이 성노예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의 내용을 다른 것을 말하거나, 속이거나,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모든 종류의 사기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1924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난 손판임은 그녀를 좋은 사무실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사토미'라는 40대의 일본 여자의 말에 속아서 1941년에 끌려갔다. 그녀는 부산에서 다른 40명의 여자들과 배를 탔다.³⁰ 그녀는 태평양의 라바울, 뉴기니아, 보루네오 등의 섬에서 필리핀까지 다양한 지역의 위안소로 끌려다녔다. 1926년 전라남도 장지에서 태어난 김태선(가명)은 1944년 9월에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끌고 가니 숨어 있으라고 하여 숨어 있었다. 약 일주일 간을 숨어 지내던 어느날, 가족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나왔다. 그 때 일본인과 한국인이 들이닥쳐 그녀를 돈 벌 데가 있다고 끌고 갔다. 인천을 지났을 때 대장이 일본에 있는 공장에 간다는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오사카에 도착하여 사이공의 '아라비라마루'로 보내졌다. 그리고 버마로 끌려가 랑군에서의 '위안부'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다.³¹

5.17 1928년에 태어난 하상숙은 1944년에 두명의 한국인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군대를 위해 연예부에서 일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의 한구, 징펄리에서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³² 그녀의 일본식 이름은 '기미코(또는 군자)'였다. 간호부 일을 하러 간다는 명목도, 사기의 방법중 하나로 종종 등장한다.³³

5.18 또한 유괴와 다른 종류의 폭력이 연행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심달연(1927-)이 12살, 13살 무렵에 언니와 둘판에서 나뭇을 캐고 있었을 때, 두 명의 남자가 와서 그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웠다. 그녀는 트럭 안에서 방과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붙잡혀온 다른 여자들을 보았다. 여자들이 울며 매달렸으나, 남자들은 때리고 발로 찼다고 한다.³⁴

5.19 종종 강요의 상황에서 가족의 동의 하에 여성을 주선했다고 하는 것은 연행의 강제적 성격을 정당화하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다.³⁵

²⁷ See Annex II.2 below.

²⁸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ces below.

²⁹ See the Table in Annex I.2 below.

³⁰ 일본군의 필리핀 점령 이후, 미군 장교가 시찰을 나온 야전병원에서 그녀는 강제로 간호부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69-80 쪽, 한울.

³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229-237 쪽, 한울.

³²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x below. See also para. Below

³³ See the testimonies of Annex II.2 below.

³⁴ Ibid.

³⁵ Ibid.

5.20 '위안부'의 강제 연행과정에서 연행자나 일본 군인은 여성을 고문하거나 강간, 집단 강간과 같은 성적인 폭력을 자행하였다.

5.21 강덕경(1929 - 1997)은 15 살 되던 해에 학교 선생님께서 여자근로정신대에 가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녀는 일본 토야마현의 후지코시 비행기 공장에 보내졌다. 그녀는 그곳에서도 망쳤으나, 곧 일본 군인에 의해 붙잡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강제로 트럭에 실려갔고, 가는 길에는 군인경찰과 운전수와 자신만이 있었다. 군인경찰은 트럭을 세우더니 그녀를 밤중에 언덕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했다.³⁶

5.22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안부' 연행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그 당시 조선에까지 적용되던 일본의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안부' 연행과정은 '노예 사냥'과 전혀 다름이 없다.

5.23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례에서 강제 연행에 관여한 사람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일본 전시 문서에 의하면, 위안소의 경영자이기도 했던 연행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 군대에 의해 파견된 사람들이다.³⁷ 그들은 일본 군대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거나 각 부대 수송부의 요청이 있는 지역의 관련 군 사령부에 의해 선발된 사람이다.

5.24 10 년에 걸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위안부'의 강제연행에서 군부, 경찰, 행정 당국의 관여가 없었다면 여성과 아이들의 매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위안부 연행자들이 군 또는 재외공관(영사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연고지나 알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들은 해당 동원지역의 일반 행정 라인이나 그 당시 가장 조직적이고 강제력을 가졌던 지방 경찰 혹은 헌병들의 의뢰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신매매조직에 가까운 대도시의 통상적인 직업소개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길이 있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서가 발행하는 도항증명서는 광범위한 감시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경찰서의 도움의 없이는 발급 받을 수 없었다.

5.25 일본 군과 행정당국은 한국 전역과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한국 '위안부'의 동원은 조선 총독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당시 각 지역의 관할 업무와 경찰 업무는 Bureau of Police 가 담당하고 있었고, 도지사가 지방 경찰과를 통해 각 지역의 경찰서를 관할하였다고 하여도, 일본 천황으로부터 식민지 정책에 대한 전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조선 총독이었다. 조선 내의 일본 총독부와 조선군의 총사령관과의 일반행정라인과 군 기관은 한국인 '위안부'의 연행에 체계적으로 이용되었다. 미나미지로는 1936 년부터 1942 년까지 총독이었다. 관련되는 다른 총독으로는, 고이소 구니아키(1942 년부터 1944 까지),³⁸ 아베 노부즈키(1944 년부터 1945 년까지)가³⁹ 있다.

³⁶ Ibid.

³⁷ Yoshimi Yoshiaki, *Kyodo Kenkyu Nohogun Ianfu* (Joint Research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tsuki Co. (1995).

³⁸ 고이소 구니아키(1880 - 1950)는 관동군 참모부장(1939.8 - 1934.3), 조선군 사령관(1935.12 - 1938.7), Minister of Colonial Affairs(1939-1940), 조선 총독(1942 - 1944), 수상(1944.7 - 1945.4)의 직위에 있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그는 특히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전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1944 년 고이소가 수상이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잔악행위와 여타 전쟁 범죄는 너무 악명이 높아, 고이소의 지위에 있는

- 5.26 일본 제국군의 사령관은 조선에서 강제 '위안부'연행에 참여하거나, 강제연행을 기획하고, 동조하고, 명령을 내리고, 협조하고, 부추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 5.27이 밖에, 일본 제국군은 조선의 일본군이나 조선군의 사령부에 조선여성을 위안소로 모집할 것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1941년 일본 제국군이 관동지역에 주둔하였을 때, 관동군특종(特種)연습을 계기로 관동군이 2만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해 주도록 조선총독부에 요청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 당시 관동군 참여 있던 하라 겐시로에 의하면 관동군의 동원계획에 따라 the office of general staff가 조선 총독부에 요청을 했다.⁴⁰ 조선 총독부는 8,000명의 조선 여성을 북지에 보냈다. 우메즈 요시지로는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야마다 오토조 다음으로 관동군의 사령관이었다.
- 5.28 조선 총독부는 '위안부'를 군대에 보내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경비의 측면에서 관여하였다.⁴¹
- 5.29 일제의 육군과 해군은 히로히토를 정점으로 하는 각각의 명령체계에 따라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 5.30 1941년 11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방군의 사령관이었던 데라우치 히사이치하에서 일본군이 1492년에 버마를 점령하였을 때,⁴² 동남아시아의 점령지역에 '위안서비스'를 목적으로 조선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일본 업자들이 조선으로 몰려 들었다. 조선군 사령부는 명백하게 민간 업자들에게 '위안부'를 모집할 것을 요청했고, 전폭적으로 그들을 지원했다. 이러한 공고가 나가고, 지원자들 중에서 기타무라 에이번과 기타무라 토미코는 조선군 사령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17세에서 29세에 이르는 22명의 조선여성을 300원에서 1000원의 진도금으로 매수했다. 조선군 사령부는 기타무라 부부에게 모든 일본군 부대가 수송, 식량 지급, 의료 등의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한을 주었다.⁴³
- 5.31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1941년 7월부터 1944년까지 조선군 사령관이었다.
- 5.32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는 '위안부'에게 일어나는 일의 성격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위안부' 모집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묵인과 그 범죄의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람이 그 악명 때문이거나, 내부 조직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라도 모를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판결문, 453 쪽. 그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³⁹ 하라 겐시로(1875 - 1953)는 수상(1939.8 - 1940.1), 조선 총독(1944 - 1945)을 역임했다.

⁴⁰ 일본 기소장 2 쪽-4 쪽, 중국 기소장 참조.

⁴¹ S-11414, S-12382, and S-14807 (emergency coded telegram between Kalgan, Inner Mongolia and the Bureau of Financial Affairs, the Korean Government-General sent on 4 June, 13 June, 6 August 1944), found in US National Archives, RG 457,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Entry 9011 Japanese-German Diplomatic Messages Box 153 and RG 457 Historic Cryptographic Collection, Pre WW I through WW II Box 900.

⁴² 데라우치 히사이치(1879 - 1946)는 대만군 사령관(1934), 육군대신(1936.3), 지나파견군 사령관, 북지나방면군 사령관(1941.3 - 1944.11), 남방군 총사령관(1941.11 - 종전)을 역임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소장 참조.

⁴³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Attached to U.S. Army Forces India-Burma Theater, Japanese Prisoner of War Information Report No. 49 (1 Oct. 1944). For the case of the Ogasawara Islands, see Annex I.2.

이것에 비추어 볼 때,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카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지, 기타무라 에이벤, 기타무리 도미코는 아래와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기소조항 3:

법정 현장 2조 1항에 의거하는 전쟁범죄(적대적 상황에서 강제적 서비스, 불법적인 감금, 인질, 강간, 고문, 비인도적 처우, 민간인 공격, 사용, 징집 또는 징병)

기소조항 4:

법정 현장 2조 1항에 의거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노예화, 강간, 고문, 박해)

일본군 위안소로 '위안부'의 강제 이송(기소조항 5-6)

5.33 강제 연행 이후에, 조선인 여성은 체계적이고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대부분이 이국 땅인,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으로 끌려갔다.

5.34 김군자가 연행자에게 끌려 트럭에 실렸을 때, 40 대 가량의 군복을 입은 조선남자와 7 명의 다른 여자들을 보았다. 그녀는 트럭을 타고 하루 종일 이동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군대 트럭이 있는 곳까지 갔다. 그 트럭으로 인계되어 조금 더 타고 갔더니, 이층짜리 여관 처럼 생긴 낡은 집 앞에 멈췄다. 그곳은 대만의 후이춘이었고, 건물 앞에는 '긴가쿠 이안조'라는 간판이 있었다. 그 지역은 관동군 71사단의 관할 하에 있었다.⁴⁴

5.35 연행된 여성의 강제 이송은 일본 행정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현지 혹은 후방에서 일본군의 요청으로 '위안부'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획은 일본 영사관과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내무성, 내각에 의해 치밀하게 입안되었다.

5.36 강제 이송에 대한 기획은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중일전쟁이후 도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의 자유도항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중국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발행한 여권이나 증명서, 즉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⁴⁵ 미나미 지로의 감독하에 있던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보안과에서 1937년 9월 17일에 발행한 회람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5.37 1939년 3월 10일 중국 한구로의 여행에 관한 서신을 보면, 조선 총독부 내의 외무부가 지방 경찰서에게 그들이 도착하는 군대의 위안소로 행선지를 제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⁴⁴ 강제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 생존자인 하상숙, 김복동, 김군자, 박용심, 송신도가 있었던 곳에 주둔하였던 군대의 이름이나 가해자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는 법정 일본 검사단 내의 재일 한국인 연구자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⁴⁵ 外務次官(1937.8.31), 「不良分子ノ渡支取締方ニ關スル件」, 자료집성 1.

있다.⁴⁶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통과하는 경우에는 현지 헌병이나 주둔군이 발급한 여행증명서가 필요하였다.⁴⁷

5.38 1940년 5월 7일에 중국의 위안소 영업자를 허가하는 도지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각의 결정을 보면, 재중 영사관의 경찰서장이 발급한 증명서에 '고용된' 여성의 숫자가 명기된 경우에 한해서 도항을 허락하고 있다.⁴⁸

5.39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위안부'는, '위안부'의 이송과, 1942년 4월에 인사국 은상과에 위안소의 경영을 허락한 육군성의 통제 하에 남방으로 보내졌다.⁴⁹

5.40 기타무라 부부는 1942년 7월 10일 조선인 여성 22명은 다른 703명의 조선 여성과 90명 정도의 일본 포주들과 함께 부산을 출항했다.

5.41 같은 날, 문옥주(1924 -)도 부산에서 버마로 떠났다. 1924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문옥주는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 부산에 갔다. 그런데, 조선 남자(이름은 '마즈모토')와 조선 여자가 역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펠 호텔'이라고 불리는 여인숙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고, 거기에는 이미 16명의 다른 여자들이 와 있었다. 1942년 7월 10일에 18명의 여자들이 부산에서 배를 탔다. 이 배는 여섯에서 일곱의 다른 배를 거느린 군함이었다. 그 배는 300명에 400명 가량의 여성들을 데리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18명의 여자들은 하나의 그룹이 되었고, 다른 여자들도 그룹으로 만들어졌다. 문옥주가 다른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들 또한 돈벌러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배는 한달에서 두달 가량 항해를 한 후에 마침내 랑군에 도착하였다.⁵⁰

5.42 기타무라 부부도 대만을 경유하여, 싱가포르로 가는 22명의 여성을 태우고; 싱가포르에서 다른 배로 갈아 타고, 8월 20일에 랑군에 도착하였다. 랑군에서 일행은 각각 2-30명의 그룹으로 나뉘진 다음, 각각의 그룹은 버마의 각지의 다른 연대에 속해있는 위안소로 나누어 보내졌다. 기타무라 부부는 제 114 연대에 배치되었다. 몇 달간 몇몇의 도시에 머무르다가 1943년 1월경에 미치나로 갔다. 기타무라가 경영한 위안소는 '쿄에이'라고 불리웠으며, 그 지역에 다른 두개의 위안소가 더 있었다.⁵¹

5.43 문옥주도 마찬가지로 트럭을 타고 버마 중부지역의 만달레이로 보내졌다. 군대는 단층건물을 위안소로 개조하고 있었으며, 만달레이에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소였다. 그 지역은 다케우치 히로시(1941년 4월부터 1942년 12월까지)가 사령관으로 있는 55Division의 사령부(the headquarters)가 있는 지역이었다.⁵² 그녀는 '후미라 요시코'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렸다.

⁴⁶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9.3.10), 「漢口渡航者取締ニ關スル件」

⁴⁷ 拓務次官田中武雄「支那ニ於ケル皇軍占領地域内旅行ニ對スル證明書發給狀況ノ件」, 1939.8.9.

⁴⁸ 「渡支邦人暫定處理ニ關スル件」, 1940.5.7.

⁴⁹ See Hata Ikuhiko, op. cit., p. 104.

⁵⁰ Keith Howard (ed.), *True Stori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Cassell, 1995), pp. 108-109.

⁵¹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 Research Paper: 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No. 120 (15 Nov. 1945), pp. 17-18.

⁵² See Morikawa Machiko, *Sensen Burma Sengen Shidan no Ianfu Datta Watashi* (Mun Okju: I was a 'Comfort Women' of the Tate Division in the Burma Front), Nashinokisha (1996).

5.44 일본군은 조선 여성을 '군수품'으로 취급하였다. '위안부'들은 추방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와 노예와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사기로 연행된 홍애진(1928-)은 군함을 타고 상해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장교가 그녀를 작은 방으로 끌고갔다. 그녀가 저항을 했으나, 장교는 그녀의 옷을 찢어버려 완전히 발가 벗긴다음, 긴 칼로 위협하면서 강간을 하였다.⁵³

5.45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는 일본정부와 일본군 내에서 그들의 지위와 위치로 볼 때, 조선 여성을 아시아-태평양의 각지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 이송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볼 때,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기타무라 에이번, 기타무라 토미코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기소조항 5: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하는 전쟁 범죄(불법적인 추방과 이송)

기소조항 6: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추방)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

1. 강간 (기소조항 7-8)

5.46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왜 끌려가는 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조선인 '위안부'에게 처음으로 자행되는 일이 강간이었다.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성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강간은, 위안소의 엄격한 통제아래 하루에서 수십 번씩 몇 달, 몇 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으로 행해졌다. 일본군은 위안소에 갈 수 있는 요일, 시간, 요금 등 위안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규정은 민간 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위안소 역시 철저히 지켜야만 했다.

5.47 김군자가 1942 년에 후이친의 위안소에 도착한지 이틀에서 사흘이 지난 후에, 일본군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을 당하였다. 이 위안소는 김군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온 조선남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저항을 했다가 귀를 세차게 얻어 맞았다. 오른쪽 귓볼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채 내버려 두어, 그녀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 곳에서 그녀는 '기모코' 혹은 '9 번 방'이라고 불렸으며, 일본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일본 군인은 심지어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왔다. 일본군인들

⁵³ See Annex II below.

은 사무실 거처서 앞마당에 방방이 줄을 섰다고 한다. 전체 한 100명 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많이 오는 날이면, 약 40명 가량의 군인들을 받아야 했으며, 그 때는 씻을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위안소의 경영자는 여자들을 종종 때리고 다른 남자와 있을 때도 감시를 하였다. 그녀는 끔찍한 전쟁터를 코 앞에 두고, 감히 도망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5.48 중지나 제 11군 사령관인 오키무라 야스지는 1938년 10월 27일에 그의 상관인 중지나 파견군 사령관인 하타 순로쿠와⁵⁴ 제 11군 참모관들과 결탁하여 한구의 제 11군 부대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⁵⁵

5.49 1922년에 태어난 송신도는 1938년 닝저 중국 문창의 '세이카이칸(세계 클럽)'이라 불리는 위안소에 사기로 연행되어 간 피해자이다.⁵⁶ 그녀는 의료 검사를 마친 후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으며, 계속 울면서 그 방에서 도망가려고 했다. 이후에 위안소 경영자는 그녀를 구타하고, 굶겼으며, 작은 방에 감금하였다. 송신도 역시 일본 군인이 칼로 치거나, 찌르거나 하는 위협을 받았다. 그녀는 그 곳에서 화장실 소독에 쓰이는 크레졸을 병 채 들이마시거나, 목 매달아 자살하는 '위안부'를 보았다고 한다. 거기에는 임신한 '위안부'도 다수 있었다. 임신한 경우에도 군인을 받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송신도가 그 곳에서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도 강제로 군인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임신 7개월째 접붙은 아이를 유산했다고 한다. 그 위안소에 오는 군인들은 제 11군 6사단과 9사단의 소속이었고, 오키무라 야스지가 사령관이었다.

5.50 1944년 하상숙은 40여명의 다른 여들과 함께, 한구의 적경리 위안소에 도착했다. 그 위안소는 평양에서 온 부부가 경영하고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한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들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군의관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검사를 하였다. 그 때, 군의관은 하상숙이 처녀인 것을 알았으나, 피임약을 주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영국 조계의 인도인이 지은 장항관으로 갔다. Yamada Seigichi에 따르면, non-commissioned officer가 사진과 영업허가증, 부모로부터의 동의 서신, 신청인의 지방관리에 의해 발행된 보증서를 조사한 후에, 헌병대가 보내온 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⁵⁷ 처음에 그녀는 세 명의 일본군을 상대하였다. 나중에는 보통 하루에 10명에 15명에 이르는 군인을

⁵⁴ 하타 순로쿠(1879 - 1962)는 대만 사령관(1936.8), 중지나 파견군 사령관(1938.2 - 1938.12), 육군대신(1939.8 - 1940.7), 지나파견군 사령관(1941.3 - 1944.11)을 역임하였다. 극동국제군사법정은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가 유죄임을 밝혔다. "또한 하타가 이러한 일들(중국에서 그의 명령 아래에 일본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잔학행위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 무관심 했더라도, 그런 잔악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민간인과 전쟁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만들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군부대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판결문, 446 쪽.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기소장 참조.

⁵⁵ 1932년 상해파견군 위안소의 설립과 기획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 기소장 참조.

⁵⁶ 그녀는 돈을 더 잘벌게 해준다는 일본인 여자의 말에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x below.

⁵⁷ *Bukanheitan* (Wuchan Army Supply Depot) (1978).

상대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정도를 받았다. 그 지역도 역시 오카무라 야스지의 지휘아래 있던 중국파견군의 점령지역이었다.⁵⁸

5.51 난장에 있던 박용심은 하루에 평균 30 명에서 40 명의 군인을 받아야 했다. 하루는 너무 아파서 장교를 거절했는데, 그 장교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칼을 빼더니 그녀의 목을 찌르면서, 제국군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그녀가 피를 삼키고 있는 동안 장교는 강제로 그녀를 강간했다.⁵⁹

5.52 김용숙(1927-)도 1939년 12살의 나이에 중국 센양으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 그녀를 끌고 간 사람은 '나카무라'라는 장교인데, 그녀를 단층짜리 위안소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오다카'라는 일본 이름을 지어주었다. 군대 진영 내부에 위치해 있던 위안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변은 개와 보초가 지키고 있었다. 끌려간 첫날, 밤에 나카무라가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어려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나카무라는 그녀의 질을 넓힌다고 칼로 찢어 버렸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악화되었지만, 어떠한 의료적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계속 군인들을 강제로 받아야 했다.

5.53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기타무라 에이벤, 기타무라 토미코는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위안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내리고, 위안소를 방문하는 것을 군대 생활의 일과로 지정함으로써 강간의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일본군의 강간을 조장하고 인정하였다.

5.54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기타무라 에이벤, 기타무라 토미코는 '위안부'의 체계적인 강간을 기획, 조장, 명령, 협조, 선동하였거나 그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기타무라 에이벤, 기타무라 토미코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기소 조항 7: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전쟁 범죄(강간 및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우)

기소 조항 8: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강간 및 비인도적인 처우)

2. 고문, 상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 (기소조항 9-10)

⁵⁸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x below.

⁵⁹ Ibid.

5.55 한 노인에 의해 봉천의 위안소로 차출된 홍강립(1922-)은 일본군을 받은 후 너무 아팠다. 정기 검진 때, 군의관은 질이 너무 작다면서, 마취도 없이 입구를 칼로 찢었다.⁶⁰

5.56 대부분의 다른 조선인 '위안부'들 역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윤간으로 인해 성기가 손상되고 성병에 전염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재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 전 생애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5.57 그들은 또한 고문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모욕 등의 폭력을 당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 덧붙여, 최화선(1927-)의 증언은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1994 년 그녀가 밤에 찾아온 일본인 사무관과의 성교를 거절하자, 그는 그의 성기를 입에다 넣으려고 시도하였고, 그녀는 그 성기를 깨물어버렸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는 보초에게 그녀를 때리라고 시켰다. 보초는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가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이틀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내버려져 있다가 그녀는 창고에서 의식불명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오른 손이 부러졌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⁶¹

5.58 1945 년, 김복동과 다른 '위안부 여성'들은 싱가포르의 10 사단 병원(?)으로 실려왔다. 일본군들은 연합군측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범죄적인 위안소 체계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들에게 간호 훈련을 시켰다. 이 여성들은 자주 수혈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수혈을 한 후 그녀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지러웠다.⁶²

5.59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은 고립적인 사건들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위안소 정책의 귀결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야만적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알려진 처벌 사례는 없다.

5.60 히로히토, 토조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타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그리고 오카무라 야수지는 일본군들로 하여금 한국인 '위안부'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고문 행위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61 히로히토, 토조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타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그리고 오카무라 야수지는 '군위안부'에 대한 고문의 임무에 계획하고, 조장하고, 명령을 내리고, 지원하고, 부추키거나 또는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때, 히로히토, 토조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타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수지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⁶⁰ See Annex II below.

⁶¹ 1942 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하씨 성을 가진 이장이 그녀를 강제로 트럭에 태워 끌고갔다. 그는 그녀를 대구에 있는 어느 부잣집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그녀는 그 부잣집의 딸 행세를 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리고 나서 연행자는 그녀를 방직공장으로 데려갔다. 얼마 후 공장의 일본인 우두머리가 그녀에게 일본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질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1943 년 겨울 그녀는 배를 타고 부산과 일본을 경유해 러시아와 북만주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섬으로 보내졌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1999), 193-199 쪽.

기소조항 9:

법정 현장 2 조 1 항의 의거한 전쟁범죄(고문과 고통, 상해, 인간의 존엄성 유린을 일으키는 고의적 행위)

기소조항 10: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고문)

3. 노예화 (기소조항 11-12)

5.62 조선인 '위안부' 들은 계속되는 강간 상태에서 어떠한 종류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기 결정권도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조건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들은 군인들이 감시하에 사실상의 감금 체제 하에 있었다. 운신의 자유는 거의 없었다: 휴일날 외출을 할 때에도 감독하는 군인이 여성들에 동행했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공개적인 참수를 수반하는 지독한 처벌이 내려졌다. 비록 이러한 용도를 위한 군표가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매우 자주, 아프거나 생리중이거나 임신한 '위안부'들도 일본군을 받도록 강요 당했다. 규정상으로는 군대에서 나누어주는 피임기구('샷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여성들은 또한 요리, 세탁, 간호와 같은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다.⁶³ 폭력적인 수단과 더불어, 빚은 또한 '위안부'에 대한 통제 수단이었다. 몇몇 경우에, 이송도 되기 이전에 돈을 지불함으로써 처음부터 빚을 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빚이 늘어가기도 했다.⁶⁴ 보다 빈번한 경우는, 위안소로 끌려온 후 무거운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위안소의 '위안부'에게 배당된 방은 종종 매우 작은 칸이었고, 적절한 벽이 없는 경우도 빈번했다. 전방 지역에서는, 병영진까지 이동하여 임시적인 군대 텐트, 때로는 여우굴에서 일본군을 받도록 강요당했다. 식량 배급과 의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못했다.

5.63 '위안부' 의 조건이 이미 일종의 노예제였지만, 이동 군위안소에 소속된 군위안부 여성들 (특히 한국인 군위안부 여성들)은 언제나 전선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다. 그 결과, 민간인 여성들은 노예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군대의 계획에 달려있게 되었다.

5.64 심지어 일본군 최고위 장교는 위안부 체제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안부'가 된 여성들과 군사들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그 중 한 예는 오키나와의 제 24 군대, 3475 산악 부대 내부 서비스에 관한 규정 내의 1944 년 12 월 20 일의 위안소 규정이다. 지휘

⁶² See Annex II below.

⁶³ See the Testimonies in Annex II.4 below.

⁶⁴ See the Testimonies in Annex II.3 below.

관은 육군중장 아마미야 쿠수미였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들은 "공동 소유의 개념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점유의 개념(또는 개인적인 소유)의 개념은 금해야"하며, "위안부 여성들은, 고객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공평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봉사할 것으로 명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여 몸을 망가뜨리거나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다."⁶⁵ 이는 감정의 노출을 금하고, 포로가 된 여성들을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규정은 또한 얼마나 이 여성들이 노예화되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준다.

5.65 김복동은 광둥에서부터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안소로 끌려다녔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녀는 전쟁 말기에는 간호를 하도록 강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둥 지역은 안도 리키치 사령관이 지휘하는 제 21 군대가 통제하였다. 제 21 군대가 광둥을 점령하기 직전에, 사령관은 내무성과 대만총독부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한 '위안부'의 차출을 요구하였다.⁶⁶ 1939년 4월에 제 21 군대의 총사령관은 위안소가 설립되었으며, 그 군대가 관리하는 '위안부'의 수가 850 명이라고 보고하였다.^{67,68}

5.66 문옥주는 1944년에 만달레이 사단 사령부가 Akyab로 옮겨갈 때 군대를 따라 강제로 이동하였다.⁶⁹ 55Division의 사령관은 그 당시 하나야 타다시(1943년 10월부터 1945년 7월까지)였다. 그리고 다시 Prome로, 랑군의 '랑군 가이칸' 위안소로 옮겨졌다. 거기에서 세달 후에 그녀가 속해 있던 그룹은 기차로 태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군용 트럭으로 Ayutthaya로 옮겨져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상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⁷⁰

5.67 박용심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동안 난징의 '긴시로' 위안소에 있었다. 군대 병영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위안소는 둘레가 철조망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그녀의 일본이름은 '우다마루'였다. 이 지역은 그 당시 하타 순로쿠의 지휘아래 있던 중지나 파견군이 점령하고 있었다.⁷¹

5.68 그녀는 그 곳에서 다시 두 명의 일본군의 감시 아래 상해를 거쳐 버마의 라시오에

⁶⁵ Wurasoe Shisha Editorial Board, *Wurasoe Shisha* (History of the City of Wurasoe) (1984), 92/Bun 1.

⁶⁶ 内務省警保局長・外事課長(1938.11.4), 「支那渡航婦女ニ關スル件伺」, 자료집성 1.

⁶⁷ Wartime Ten-Day Report (Rear Matters), 11-20 April 1939. See also testimonies and photographs of soldiers of the 21st Army compiled in Nishino Rumiko, *Comfort Women and Fifteen Year War* (1993).

⁶⁸ 1941년 관동 주둔군은, 1941년 3월부터 1944년 11월까지 하타 순로쿠 휘하 중국 파견군 소속 제 23 군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김복동은 홍콩으로 강제적으로 옮겨진 듯 하다. 홍콩에서의 '위안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같은책 참조.

⁶⁹ 1942년 2월 7일 붙잡힌 제 112 보병연대 소속 한 일본인 전쟁포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KYAB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매춘부가 있었다. 몇몇은 HPARABYN과 ALETHANGYAW까지 옮겨갔다. 그러나 그들은 장교들을 위해 엄격히 예약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부대원들은 화가 났었다." 남서 태평양 지역 총사령부 연합 통역부, 남서 태평양 지역 조사 보고서: 일본군 내에서의 패락(1945.2.16).8 쪽. 또 다른 전쟁포로는 버마에서 위안부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각 사단에는 5-6개의 위안소가 팔려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일본 여성들 만큼이나 한국 여성들이 있었다. 시간당 요금은, 장교는 5 엔, 사병은 4 엔, 그리고 개인은 3 엔. 의무적으로 콘돔을 사용했고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을 받았다." 같은책.

⁷⁰ See Howard, op. cit., p. 113

⁷¹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x below

있는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 당시 라시오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버마방면군 56사단 사령부였고, 사령관은 마츠야마 유조⁷²였다. '이카쿠로' 위안소는 마을과 동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와카하루'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렸다.⁷³

5.69 2년후에 그녀는 다시 56사단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버마의 라멩(혹은 마츠야마)으로 이동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마자,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와 다른 '위안부'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한 가운데까지 군인들을 위해 주먹밥을 날라야만 했다. 거기에 있었던 12명의 '위안부'들 중에서 8명은 공중포격으로 죽었고 4명만이 살아 남았다. 일본수비대가 패배했을 때, 그녀와 다른 세 명의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⁷⁴

5.70 송신도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한국의 '세카이칸'이라는 해군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빨래, 청소 등 강제 노역을 했다. 아이를 그녀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카쿠슈에 있는 또 다른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녀는 안니, 조안, 호킹 등 다양한 지역의 위안소로 끌려 다녔다. 이 위안소들은 각 전장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다.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 그녀는 내쫓기는 것이 두려워서 한번은 민간요법으로 유산을 하기도 하였다. 그 곳에서 일본 군인들은 그녀와 다른 '위안부'들에게 중국인 포로의 대량학살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였다. 일본 군인들은 구덩이를 파놓고 중국인 포로들을 칼로 학살하였다. 학살이 끝나고 일본 군인들은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서 '위안부'들은 군인들의 와인잔에 술을 따라야만 했다. '위안부'들은 종종 보초를 서기도 했으나, 여기에는 어떤 '임금'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부'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톨톨이 돈을 받아 '수입'을 올렸다.⁷⁵

5.71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키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 기타무라 에이번, 기타무라 토미코는 적어도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노예화를 기획, 선동, 명령, 협력, 교사하였거나 그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제국군의 병영내 혹은 그 근접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다. 위안소는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키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와 다른 고위 장교, 하위 장교, 병사들에 의해 운영된 군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하에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

⁷² 1942년 3월 랑군에 주둔한 후 일본군 52사단은 북쪽으로 진군하여 Lashio and Myitkyna 로 이동했다. 같은 책.

⁷³ 56사단의 사병이었던 사람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포로가 된 후, Kunmying camp 에 있을 때 그는 법정에 제출되었던 사진 속에서 그 위안부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⁷⁴ 1944년 9월 3일 미군 장교가 그들을 심문했다. Kunmying 에 있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그녀는 하혈과 수술로 유산했다. 후에 그녀는 북한으로 돌아갔다.

⁷⁵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ces below

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 기타무라 에이번, 기타무라 도미코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기소조항 11: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하는 전쟁범죄(노예화, 불법적인 감금, 비인도적인 처우, 의도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킴, 민간인 공격, 과도하게 고의적인 죽음, 상해, 손해)

기소조항 12: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노예화)

4. 학대(기소조항 13-14)

5.72.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는 최소한 1937 년부터 1945 년까지, 일본 제국 군대와 정부에 소속되어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지위를 가지고, 일본군과 정부의 명령, 통제하에 있었으며, 일본군 정부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채 일본군 위안소에서 인종적인 이유로 '위안부'였던 조선 여성들과 소녀들을 학대했다.

5.73. 학대의 일종으로서,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야마 유조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계획을 기획, 선동, 명령, 협력, 교사했거나 또는 그것에 참여했다:

- a. 최소한 1937 년부터 1945 년까지의 긴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동원 그리고 조선의 민간인 여성 거주자를 위안소로 수송;
- b. 위안소 안에서 동원된 조선 여성들의 지속적인 감금;
- c. 위안소에서 조선 여성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강간, 고문, 구타;
- d. 위안소에서 조선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예화;
- e. 위안소에서 조선 여성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
- f. 위안소 내에서 조선 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상황의 수립과 지속.

5.74.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야마 유조는, 천황, 수상, 육군대신, 사령관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일본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군 사령관들 또는 조선의 총독과 협조하여, 위안소 체계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용인하였으며, 위안소를 비롯한 여타의 성적 노예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반복적인 강간과 노예화, 지속적인 육체적 심리적 폭행,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 등의 성격을 띠는 '위안부'의 생활 조건을 확립함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에 참여하였다.

5.75. 일본 군대와 행정당국과 민간 업자들은 한국의 여성들을 고향으로부터 군대병영과 일본군 점령지로 끌고가고, 성노예 행위가 일어나는 위안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노예 제도의 한 전형을 만들었다.

5.76. 전체 위안부의 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위안소에 있었던 그들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 지배 하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한국인 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본 정책과의 연관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77.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종간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일본의 전쟁수행에 공헌한다는 명목하에, 한국인들에게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해간 일반적 강제동원의 하나이다.

5.78. 생식 기관의 파손, 임신 방해, 낙태 등 위안소 안에서 행해진 다양한 범죄 행위는 민족 말살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위안부가 일본 병사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군수 물자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일본 여성들에게 다산을 장려했던 일본 정책과 대비된다.

5.79.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차별 행위는, 예를 들면 위안소에서 그들이 받는 돈에서의 차등과 같이 만연했다. 전방에 보내진 대부분의 위안부는 한국인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키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야마 유조는 이러한 행위들에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죄를 범했다.;

기소조항 13: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전쟁 범죄(민간인 공격).

기소조항 14: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학대).

5.살인(기소조항 15-16)

5.80. 희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경우의 살인이 있었다.⁷⁶ 위안부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폭행이 가장 극단적으로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 살인은 때때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위안부들이 전쟁터나 전방으로 가는 일본

⁷⁶ See the Testimonies in Annex II.3 below and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x below (Pak Yongsim).

군대를 따라 강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후퇴를 하는 동안에도 일본군들은 위안부들을 성노예로 부렸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소모품으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5.81. 매독과 같은 성병에 감염되어 많은 위안부들이 죽었다.⁷⁷ 다른 사람들은 결핵과 말라리아로 죽었다.⁷⁸

5.82.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강간과 노예적 상황으로 인해, 위안소에서 많은 위안부들이 자살을 하였다. 김복동은 광동에 있는 위안소에 도착한 첫날 자살을 시도했었다. 처음에 성병을 검사했던 군의관이 왔다. 그녀는 뒷마당으로 달려서 숨으려고 했다. 하지만 군의관이 뒤쫓아와서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그녀는 얼굴이 마비될 때까지 맞았다. 할 수 없이 그녀는 군의관에게 복종해야 했다. 그녀는 밑에서 피가 흐르고 너무 많이 아팠다. 다음날 그녀는 두 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중국인 청소부에게 독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는 대신 뼈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죽기를 작정하고 마셨기 때문에, 군의관이 위세척을 한 후에도 3 일동안 의식을 잃었다.⁷⁹

5.83. 위안부가 임신했을 때, 그들은 인공유산술을 해야만 했다. 황금주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606 호를 맞았을 때, 그녀는 몸이 붓고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고 하혈했다. 그때 그들은 그녀를 군 병원으로 데려갔고 군의관이 자궁 안을 긁어냈다. 이런 식으로 서너번 긁어낸 후 임신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⁸⁰ 유아살해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5.84.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무라 유조는 위안부에 대한 이러한 살해 행위를 기획, 선동, 명령, 협력, 교사했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했다.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무라 유조는 위와 같은 행위들에 참여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기소조항 15: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전쟁 범죄(의도적 학살, 살인).

기소조항 16: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살해).

⁷⁷ See Annex II below.

⁷⁸ See Annex II below.

⁷⁹ Ibid (Kim Bokdong).

6. 다른 비인간적 행위들(기소조항 17-18)

5.85. 긴 시간동안 규칙적으로, 일본 군대는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성병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606 호로 알려진 약물을 주사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 상실, 종종 강제적인 불임을 야기하면서 생식 기능의 상실 혹은 죽음을 가져왔다.

5.86. 김군자는 매독에 걸렸고 삼일동안 606 호 주사를 맞았다. 그녀는 한번 임신했지만 유산했다.⁸¹

5.87. 아편, 모르핀, 다른 마약들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5.88. 다른 조항에서 고발된 행위들은 동시에 이 조항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5.89.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무라 유조는 위안부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 행위를 기획, 선동, 명령, 협력, 교사했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했다.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무라 유조는 이러한 행위들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범했다:

기소조항 17: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전쟁범죄(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우, 강요된 불임).

기소조항 18: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비인도적 처우).

종전 직후 자행된(기소조항 19-20)

5.90. 일본군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수의 한국인 위안부들에게 어떠한 생존수단도 제공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방치했다. 그 여성들 대부분이 전쟁의 혼란 중에 살해되었다. 어떤 이들은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체포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여전히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⁸²

5.91. 김군자는 1943 년부터 후이춘 이후 일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고카시 위안소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 지역은 코가 료타로 지휘관 아래에 있는 관동군 127 사단의 통제 아래 있었다. 관리인은 그녀에게 어떠한 돈도 주지 않았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위안부들에게 말했다.

⁸⁰ See Annex II below.

⁸¹ See the Selective Testimonies in the Appendices below.

⁸² See the Testimonies in the Annex II.4 below.

다. 그들 중 일곱명은 약 두주일 동안 걸어서 백두산에 도착했다. 서울 북쪽, 철원에 도착하는 데에 가끔 트럭을 타기도 하면서 녀달 여드레가 걸렸다.

5.92. 이러한 의도적인 방치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알려지지 않은 수의 위안부들을 대량 학살했다.⁸³ 태평양에 있는 괌, 팔라오, 트럭섬, 그리고 연합군에 대항한 다른 전방 지역에서 대량학살을 언급하는 생존자들에 의한 증언들이 있다. 중국, 텡중에서와 같이 일본 군대가 즉각적인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그들은 위안부를 대량 학살했다.⁸⁴ 오키나와에서 한국인 위안부들은 연합군의 격렬한 폭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수비대 함께 머물도록 강요 당했다. 오키나와에 속하는 어떤 섬들에서는 병사들 위안부들 어떠한 생존자도 없었다.

5.93. 이러한 학살은 특히 위안부에 대한 일본 군대와 정부의 범죄 증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⁸⁵

5.94. 1945 년 8 월 15 일 이치가야타이에서 열린 육군 연락 회의에서 육군대신으로부터 하달된 중요 기밀 정보를 파괴하라는 구두 명령이 내려졌다.⁸⁶

5.95.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키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무라 유조는 위안부들에 대한 살인, 대량학살의 행위를 기획, 선동, 명령, 협력, 교사했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였다.

히로히토, 토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키무라 야스지 그리고 마츠무라 유조는 이러한 행위들에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사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기소조항 19: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전쟁범죄(의도적인 살인, 대량학살)

기소조항 20:

법정 현장 2 조 1 항에 의거한 인도에 반한 범죄(살해, 학살, 학대).

일본군 성 노예제도의 희생자에게 가해진 피해와 고통

6.1 일본군성노예 제도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 위안부들에게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신체적 생식적 피해와 질병을 가했다. 임신 중절과 셀 수 없는 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가해진 체계적인 강간 때문에 겪었던 성병은 많은 여성 희생자들을 불임으로 만들었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606 호(salvarsan) 주사를 맞았으며, 심지어는 임신한

⁸³ Ibid.

⁸⁴ 법정에 제출된 사진 참조.

⁸⁵ 이것이 또한 조선인 '위안부' 숫자의 정확한 집계를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였다.

⁸⁶ 일본군 성노예범죄의 부인과 은닉, 왜곡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본 기소장 2부 참조.

여성들에게까지 맞혔다. 이 약물은 비소에서 추출한 것으로, 부종, 심각한 구토, 복부 통증과 근육마비, 혈변, 수면 장애 등을 야기했다. 또한 피고름을 흘리는 많은 수의 임신부들이 있었다. 폭행과 고문 때문에 대부분의 이 여성들은 여전히 만성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⁸⁷

6.2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의 희생자들은 커다란 심리적 외상으로 고생하고있다. 이것은 언어 장애, 정체성 혼란, 자긍심과 자신감의 상실, 진통제와 다른 약물에 대한 심각한 의존, 담배, 알코올 중독, 계속되는 악몽을 가져왔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들의 일반적인 적응능력, 감정 상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은 심각한 우울증, 비판, 불안, 살려고 하는 의지의 상실 등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편두통, 고혈압, 류마티즘과 같은 증상들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책임 부정은 그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제 2의 원인이 되었다.⁸⁸

6.3 위안부 경험과 그로 인한 피해의 과정은 일본군 성노예의 생존자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이었다. 가족의 해체와 디아스포라 현상은 그러한 피해중의 하나이다.⁸⁹ 강제적인 동원으로 인해 그들은 집과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잘 알지도 못하는 이국땅에 혼자 지내야 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채 방치되었다.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도 종종 돌아갈 집이나 가족이 없었다. 모든 가족이 징병이나 노무자로 징집되어 이미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뿌리뽑힌’ ‘집 잃은’ 고아였다. 위안부의 존재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모욕과 불명예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돌아온 위안부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워서 생존수단을 갖지 못하고 수치심 또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보는 것을 피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은 영속적인 가난과 사회적 소외 상태에 남아있게 된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사회 복귀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⁰

[남북 공동 검사단의 서명은 생략하였음]

Dated this 16th day of November 2000

⁸⁷ 부록의 이수현, <몸에 각인된 역사:일본군 ‘위안부’의 육체적 고통을 중심으로> 참조.

⁸⁸ 부록의 이철원,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제의 피해여성들의 심리평가 보고서> 참조.

⁸⁹ See the Testimonies of Annex II.4 below.

⁹⁰ Annex II, 부록의 심영희, <조선인 ‘위안부’의 침묵과 사회적 후유증:귀국 후 그들의 생활을 중심으로>참조.